

강원도립대학교 포상지침

(제정) 1998-05-01 훈령 제14호

(개정) 2012-09-21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2조(포상대상) 이 지침에 의한 포상대상은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본 대학교외의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4.25.>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지침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공적 및 창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본 대학교 발전에 적극 협조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모범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6.4.2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강원도립대총장(이하 “총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대학 발전에 헌신적인 공이 있는 경우
3. 학생 지도에 남다른 공이 있는 경우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본 대학교 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4.25.>

제8조(상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제, 전시회,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모범적 학생활동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표상시기) 포상은 개교기념일과 입학식 및 졸업식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사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일반 직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은 별도 심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며,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의 추천) ① 총장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직원 : 교학처장 <개정 2016.4.25.>
2. 일반직 : 사무국장<개정 2012.09.21>
3. 학 생 : 교학처장 <개정 2016.4.25.>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포상 규정에 의거 제반 공적 조서 등을 작성 첨부하여 추천한다.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포상자 명부) 포상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1998. 5.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4.25.>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 위 성명

년 월 일

강 원 도 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4.25.>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 위 성명

년 월 일

강 원 도 립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4.25.>

제 호

상 장

소 속

직 위 성명

년 월 일

강 원 도 립 대 학 교 총 장